

#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 개선 연구

황 소 하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hsoha@suwon.re.kr

## 요약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단순 취미 동아리 활동과 일회성 사업에 치우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 실현 기반 마련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 현행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는 ① 평가지표의 개념 및 세부내용의 모호성, ② 사업유형별 특성 미반영 ③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평가내용 부족, ④ 인건비 비중에 대한 확실적 평가기준 적용, ⑤ 평가지표 변동에 따른 평가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 존재

### □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

- (연구방법)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사업목적, 수원시 현황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업무담당자, 참여공동체 대표에 대한 자문 및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
- (개선안 도출의 기본방향) ①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핵심요소를 평가지표에 명확히 반영, ②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 차별화, ③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지표의 내용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④ 측정가능한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 구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개방성, 공동체역량을 평가지표로 채택하고 지표정의 및 세부 평가항목(평가 착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유형별 차별성) 사업유형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은 유형별 주요 평가요소에 따라 차이를 두어 구성하되, 지표배점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유형에 동일하게 적용

### □ 평가지표 개선안 및 적용방안

- 평가지표 개선안은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움·성장/확장·기획 유형(2단계)과 도움/성장/확장·기획 유형(3단계)로 나누어 대안1,2로 제시
- 현재 도움과 성장유형 간 사업내용 구분의 모호성, 공동체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기준완화 필요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대안1을 우선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대안2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 평가지표 개선사항 요약 ]

기존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공익성	30	•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기여도
운영적정성	20	• 마을만들기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20	•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 사업추진 의지 • 회비, 기금 운영 등 활동지속을 위한 자립준비성
개방성	15	• 공동체 활동 호응도 및 주민참여도 • 외부 단체·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및 사업 연계추진 정도
참여의지	15	• 적극적·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 공동체 내부회원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도



개선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대안1		대안2		
			돋움·성장	확장·기획	돋움	성장	확장·기획
공익성	25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② 공공목적의 명확성 ③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도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실현가능성	25	① 사업목적과 계획의 연계성 ② 사업내용의 적정성 ③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지속가능성	15	① 구성원의 지속의지 ② 발전가능성 ③ 장기비전 및 계획 ④ 재정자립 가능성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개방성	15	① 주민참여도 ② 교류 및 참여확대 노력 ③ 외부와의 연계·협력 가능성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공동체역량	20	① 공동체성 ② 참여의지 및 운영의 민주성 ③ 공동체 성장계획 ④ 사업 이해도 및 수행경험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정책제안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의 효율적, 효과적 적용을 위해 사업목적 및 내용, 기대성과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을 신청 공동체와 평가자에게 제시
-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 충실히 진행되어 신청 공동체가 사업목적과 평가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충분한 평가시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사업내용과 평가방법에 대한 평가위원 사전안내를 강화
- 현재 전체 예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허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고려
- 장기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목표치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성과 측정노력을 통해 사업운영의 정당성 및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노력 필요

#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수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자발적 시민참여 확대, 마을자치 실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됨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2024년까지 총 1,172건의 사업(총 7,917백만 원 규모)을 지원하였음
  - 그동안 추진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점진적 환경 개선, 마을발전 도모를 목표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옴
- 최근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마을공동체 확장도모 및 주민참여 확산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공모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일부 지원사업의 내용이 단순 취미 동아리 활동 및 일회성 사업에 치우쳐있어 공동체 지원사업의 핵심요소인 공공성과 개방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추진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사업 취지에 대한 참여공동체의 이해가 저조하여, 목적을 벗어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은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기준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바람직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보다 타당한 평가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세부 평가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그 외 사업 선정 평가방식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함
  -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평가지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와 세부 심사항목을 구성함
  - 그 외 사업 선정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함
-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참여공동체들이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02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기본현황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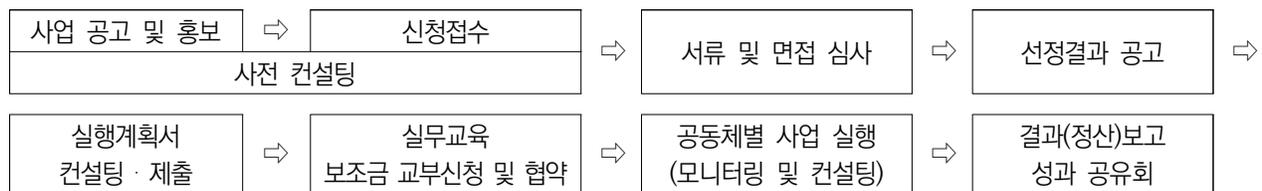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사업(community development)은 개인, 집단, 조직, 이웃, 지리적으로 묶여지면서 기능적인 커뮤니티를 긍정적 연결고리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활동이자 실천, 정책을 의미함(Weil, 1996)

  - 주민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박선희, 2014),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반 노력(사득환 외, 2023) 등으로 정의됨
  -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확산시키는 활동 전반을 의미하며 주민 자발성, 공동체 회복 및 형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개념으로 함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및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sup>1)</sup>를 근거로 수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와 마을자치 실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수원시 내 비영리 목적의 5~10인 이상의 소규모 마을공동체(주민모임)이며 공동주택, 반려동물, 친환경, 돌봄, 환경개선, 마을미디어 등 자유의제를 담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
    -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강사비, 홍보비 등을 지원함
  - 현재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가 공공위탁 운영 중이며,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됨
  - 사업예산은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며 2025년 기준, 2억 8천만 원 규모임(출연금 및 대행사업비로 편성)
  - 연도별로 사업명칭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2011년 시작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이래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부·정산의 절차를 따르며, 연도별로 추진유형에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마을공동체 성장단계를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음

  - 세부 추진절차는 신청-서류 및 면접심사-선정 및 실행 등의 일반적인 공모사업 절차와 유사하나 신청접수 단계에서 사업신청서 작성,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선정 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적임

[그림 1]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절차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2025)에서 수정보완

1) 구체적으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0조(사업), 제11조(지원), 제12조(공모계획 수립·공고) 및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제26조(지원신청 및 결정)를 추진 근거로 함

- [표 1]에서와 같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그 동안 성장단계별 혹은 지원분야별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 현재는 마을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라 돈움, 성장, 확장, 기획의 네 가지 유형과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 중임
  - 2022년에 수원시 마을자치과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추진되던 공모사업이 2023년부터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주관으로 통합·운영됨
  - 2025년에는 돈움, 성장, 확장, 기획 분야에 대한 2차 사업 선정 후, 사업 잔여예산으로 '2025년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7월~9월)을 추가적으로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 1] 2022년~2025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유형

연도	유형	비고
2022년	공동체활성화/마을자치활동	수원시 마을자치과 주관
	마을만들기 씨앗/성장/기획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주관
2023년	공동체활성화/마을자치활동/마을리빙랩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통합·운영
2024년	돈움/성장/기획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통합·운영
2025년	돈움/성장/확장/기획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통합·운영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2] 2025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유형

구분	돈움	성장	확장	기획
사업대상	신규 마을공동체 (행정동 내 5인 이상)	1회 이상 공모사업 참여 마을공동체 (행정동 내 10인 이상)	3회 이상 공모사업 참여 마을공동체 (행정동 내 10인 이상)	3개 이상의 마을공동체 연합 (수원시민 10인 이상)
사업목적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마련	마을자치 전환을 위한 공동체 활동 연계	수원형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확산
사업내용	동별 신규 마을의제 발굴 및 논의의 장 마련	마을 내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방안 수립	마을 내 다른 인적자원과 결합한 공동체 활동 추진	주제별 또는 지역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지원규모	3,000천 원X30팀	5,000천 원X18팀	10,000천 원X3팀	10,000천 원X2팀
사업예산	90,000천 원	90,000천 원	30,000천 원	20,000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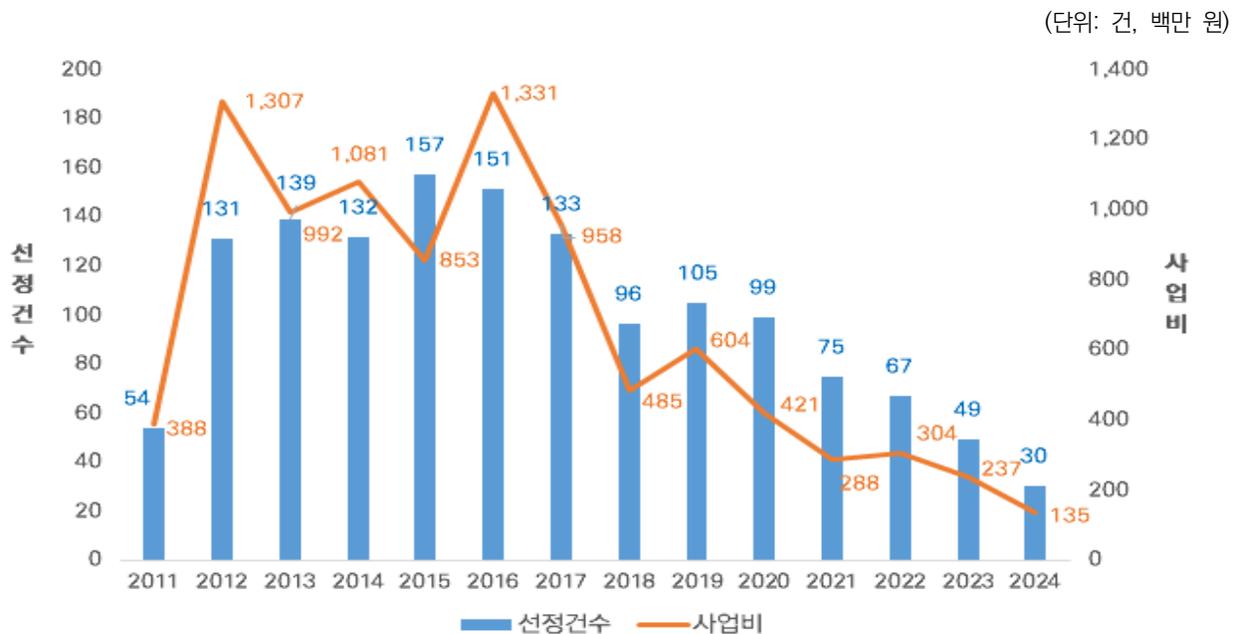
-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사업대상: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5인 이상의 소규모 주민모임
  - 사업목적: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는 포용적 마을 환경 조성, 마을 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방안 수립 및 배리어프리 관점 도입
  - 사업내용: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 지원규모: 공동체 당 최대 5백만 원
  - 사업예산: 43,000천 원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2025)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실적

- 수원시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1년 이후 사업비 및 사업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2016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이러한 추세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사업추진 초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줌
    - [그림 2]의 수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외, 수원시가 추진한 모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주관한 공동체 공모사업과 그 외의 공모사업이 모두 해당됨

[그림 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현황(2011~2024)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내부자료

- 특히 최근 3년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와 신청 및 선정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는 2022년 약 3억 원, 2023년 2억 4천만 원, 2024년 1억 3천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함
  - 이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건수도 2022년 91건에서 2023년 70건, 2024년 5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선정건수 역시 2022년 67건 2023년 49건, 2024년 30건으로 감소함
  -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산정해보면 2022년 73.6%에서 2023년 65.7%, 2024년 5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규모의 축소와 이에 따른 주민참여 감소 양상을 명확히 보여줌

[표 3] 2022년~2024년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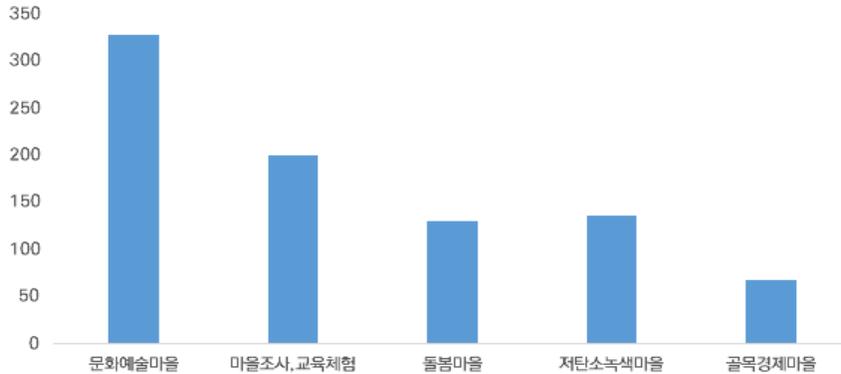
구분	사업비(천 원)	신청건수	선정건수	신청대비 선정비율	지원유형
2022	304,198	91	67	73.6%	(수원시 마을자치과) 공동체활성화/마을자치활동 (마을자치지원센터) 씨앗/성장/기획
2023	237,000	70	49	65.7%	공동체활성화/마을자치활동/마을리빙랩
2024	134,928	59	30	50.8%	돋움/성장/기획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내부자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체는 총 862개이며, 크게 문화예술마을, 마을조사 및 교육체험, 돌봄마을, 저탄소녹색마을, 골목경제마을의 5개의 주제로 활동함
  - 가장 많이 참여한 주제는 문화예술마을이며, 다음으로 마을조사 및 교육체험, 저탄소녹색마을, 돌봄마을, 골목경제마을 순임

[그림 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제별 추진현황(2011~2024)

(단위: 건)



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한함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내부자료

- 구별로는 팔달구의 마을공동체가 223개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권선구(220개), 영통구(216개), 장안구(203개) 순임

[표 4] 주제별/구별 마을공동체 현황(중복단체 제외)

구분	계	문화예술마을	마을조사 교육체험	돌봄마을	저탄소녹색마을	골목경제마을
장안구	203	79	45	36	30	13
권선구	220	75	55	32	42	16
팔달구	223	86	58	23	36	20
영통구	216	88	42	39	28	19
합계	862	328	200	130	136	68

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한함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내부자료

## 03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 및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은 1단계 마을자치지원센터 내부 서류심사, 2단계 내·외부 심사위원회에 의한 면접심사를 거쳐 이루어짐

- 1단계 서류심사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접수된 공모사업 신청서 전체에 대해 지원 자격 충족 및 중복지원여부 등을 검토함
  - 서류심사시 정치 및 종교의 목적에 해당하거나 단순 취미 동호회 활동 및 친목조성 사업, 일회성 행사 및 단순 교육강좌, 반복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수원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연도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있음

[표 5] 선정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 확인사항

선정제외 대상	중복지원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이거나 영리 목적,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li> <li>• 단순 취미 동호회 활동 및 주민조직의 친목조성 등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li> <li>•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교육강좌, 반복적인 사업</li> <li>• 법인·단체의 기존 고유사업</li> <li>• 해당연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중복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원칙: 1개 공동체는 연1회 1개의 사업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내 공모사업 지원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검토</li> <li>- 수원시 마을자치과, 공동주택과, 수원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내용과의 중복지원 여부 검토</li> </ul> </li> <li>• 중복지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명 중복 및 공동체별 임원(대표/재무/간사) 간 중복기재 (공동체 임원이 타 공동체의 단순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가능)</li> </ul> </li> </ul>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2025)

- 2단계 면접심사는 내·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질의응답 방식(15분 이내)으로 진행, 제시된 심사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점수 평균 65점 이상 획득 시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함
  - 심사위원회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자체선정(50%)과 수원시 마을자치과 추천(50%)에 의해 구성하며, 최근 2년간 심사 참여자 및 사업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제외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함
  - 2025년 현재, 면접심사 평가항목은 총점 100점 만점에 공익성(30점), 운영적정성(20점), 지속가능성(20점), 개방성(15점), 참여의지(15점) 항목으로 구성됨
  - 최근 5년 이내 우수 마을공동체 선정 이력이 있을시 가점을 적용함

[표 6]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기준(2025년)

평가항목	배점	내용
공익성	30	•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기여도
운영적정성	20	• 마을만들기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20	•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 사업추진 의지 • 회비, 기금 운영 등 활동지속을 위한 자립준비성
개방성	15	• 공동체 활동 호응도 및 주민참여도 • 외부 단체·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및 사업 연계추진 정도
참여의지	15	• 적극적·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 공동체 내부회원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도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2025)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매년 변동이 있었으며 특정 시기에는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이 적용되기도 함

- 2022년부터 2025년 간 매년 다른 평가항목이 채택되었으며, 동일한 평가항목의 경우도 배점이 다르게 적용됨
- 2022년과 2023년에는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에 차등을 두었으나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유형에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함

[표 7]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기준(2022~2025년)

구분	사업유형	평가항목 및 배점
2022년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활동	• 주민참여도(30), 실현가능성(20), 효과성(25), 지속성(25)
	씨앗	• 활동타당성(30), 공동체역량(50), 운영적정성(10), 지속가능성(10)
	성장	• 활동타당성(30), 공동체역량(30), 예산편성의 적정성(20), 지속가능성(20)
	기획	• 활동타당성(30), 공동체역량 및 운영적정성(30), 예산편성의 적정성(20), 지속가능성(20)
2023년	마을자치활동	• 참여의지(30), 지역자원과의 연계성(협업)(30), 활동타당성(20), 지속가능성(10), 운영적정성(10)
	마을리빙랩	• 활동타당성(혁신성)(30), 지역자원과의 연계성(30), 전문가와의 협업의지(20), 참여의지 및 지속가능성(20)
	공동체활성화	• 활동타당성(30), 참여의지(30), 운영적정성(20), 지속가능성(20)
2024년	돈움/성장/기획	• 공공성(20), 개방성(20), 타당성(20), 참여의지(10), 운영적정성(10), 지속가능성(20)
2025년	돈움/성장/확장/기획	• 공공성(30), 운영적정성(20), 지속가능성(20), 개방성(15), 참여의지(15)

자료: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내부자료

□ 특히 최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및 운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공모사업 선정 심사기준 및 방식에 대한 개선조치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됨

-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내용이 마을공동체 확장도모 및 주민참여 확산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공모사업 선정과정에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
  - 일부 사업내용이 공동체 사업의 핵심요소인 공공성, 개방성, 지속성 등이 결여된 단순 취미 동아리 활동, 단순 교육강좌 및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됨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

- 과도한 강사비 및 재료를 활용하여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
- 강사비, 임차비가 대부분인 교육강좌 또는 단순 취미 동호회처럼 운영되는 사업 등
- 공동체 구성원은 아니나 관계자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공동체 내부적으로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사업내용상 불필요하게 강사비가 지급되는 사업 등

- 이에 수원시는 2025년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기준 중 공익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고 운영의 적정성 항목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심사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음
  - 공익성 배점을 상향(20점→30점)하고 개방성 및 참여의지의 배점을 축소(20점→15점)
  - 운영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검토 시 강사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함<sup>2)</sup>
    - 인건비성 경비 제한규정은 예산수립 및 집행 기준으로 심사 시 탈락 사유는 아니나, 사후 예산조정 및 선정의 고려사항이 됨
  - 단순 동아리 활동 및 취미성 사업의 선정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함
- 그 외 주민제안 공모사업 개선계획으로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조치를 실시함
  - 심사위원 선정 시 기존 수원도시재단 단독 심사위원 구성 방식에서 수원시와 재단 간 공동 추천·선정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정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함
  - 시의원 및 마을전문가 추천, 최근 2년 간 심사 참여위원 선정 지양, 사업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제외 등의 원칙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 타 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 비교검토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 분석을 위해 타 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례를 비교분석함

- 경기도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선정기준을 각 자치단체별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살펴봄<sup>3)</sup>

2) 현재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인건비 제한 기준은 전체 예산의 50%임

3) 2025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계획에 의하면 공모사업 수행 시 심사기준에 개방성(공동체 활동 호응도 및 주민참여도), 공익성(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기여도)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표 8] 타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평가지표(2025년)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비고
고양시	• 적정성(25), 개방성(25), 확장성(20), 지속가능성(20), 공익성(10)	• 모든 사업유형 공통
용인시	• 사업의 필요성(15), 사업의 공익성(15), 사업의 구체성(10), 운영적정성(10), 개방성(15), 공동체 구성 및 활동(15), 장기계획(10), 지역자원 연계(10)	• 모든 사업유형 공통
화성시	• 사업내용 적정성(35/25/15/25), 공동체역량(15/25/35/25), 참여 및 개방성(35/25/15/25), 공익성 및 지속 확장성(15/25/35/25)	• 씨앗/줄기/열매/기획공모별 배점 상이
안양시	• 주민참여도(25), 사업계획의 효과성(25), 사업의 실현가능성(25),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25) - 가점 : 사업 참여의지(5), 감점 : 전년도 집행실적(-5)	• 모든 사업유형 공통
평택시	• 기본기준 : 사업목적 적합성(35/30), 구성원 협력(20/20), 실현가능성(20/15),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20/15) • 추가기준(씨앗기) : 개방성 및 공익성(5) • 필수기준(성장기·열매기) : 개방성(10), 공익성(10) • 기획공모 : 사업목적 적합성(20), 구성원 협력(20), 실현가능성(20),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20), 사업의 효과성 및 확산성(20)	• 씨앗기/성장기·열매기별 배점 상이 • 기획공모는 평가지표 및 배점 모두 상이
군포시	• 주민참여도(30) : 계획수립 및 사업운영시 구성원 참여 및 기여도(10), 사업의 개방성(10), 마을 내 자원(공동체, 주민모임, 기관 등)과 연계성(10) • 적합성(30) :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 기획을 통한 실현가능성(15), 예산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5) • 효과성(20) : 지역 내 확산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20) • 창의성(20) : 사회문제 해결 및 대안제시 가능한 사업(혁신성), 마을 특색 반영사업(고유성)(20)	• 모든 사업유형 공통
마포구/ 성동구/ 관악구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공익성 • 사업 실행력 및 효과 : 사업현실성, 자발적 참여, 예산 현실성, 민관파트너십	• 모든 사업유형 공통 • 관악구 외 배점 미설정 •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은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존재

자료: 각 자치단체별 2025년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문 및 운영계획 등

□ 타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기준을 검토해보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유사하나 구체적 평가지표 및 세부 심사항목 구성, 배점(가중치)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임

- 공통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적합성, 개방성, 지속가능성, 공익성, 참여 등 공동체 사업의 핵심요소들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평가지표, 평가지표별 세부 심사항목, 배점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남
  - 각 자치단체들은 적정성, 개방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공익성, 필요성, 구체성, 지역자원연계,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확산성, 창의성 등의 평가지표를 다양한 배점으로 조합하여 심사기준으로 활용 중임
  - 수원시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유형에 공통지표를 적용하는 자치단체: 고양, 용인, 안양, 마포, 성동, 관악
  - 사업유형에 따라 동일한 평가지표에 다른 배점을 적용하는 자치단체: 화성

- 사업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지표와 배점을 적용하는 자치단체: 평택
- 평가지표의 세부점수 부여 기준을 제시한 자치단체: 용인, 군포(일부 지표)
- 동일한 평가지표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따라 세부 심사항목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세부 심사항목은 유사하나 평가지표가 다르게 제시된 경우가 존재함
- 예) 적정성 항목은 고양시에서는 사업목적의 연관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 확인, 구성원 참여의지 및 역할분담 내용으로 평가하는 반면 화성시의 경우 공모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여부, 예산편성의 적절성으로 평가, 반면 이와 동일한 평가요소를 평택시는 사업목적 적합성과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함
-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배점을 달리 부여한 경우, 공동체 형성 초기 단계로 갈수록 구성원의 참여, 사업의 적정성 및 적합성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두는 반면 공동체 성숙 및 확장 단계로 갈수록 공익성, 공동체역량 지표 등에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
- 대다수 사례에서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 평가항목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제시되거나, 지표명과 상호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남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의 문제점

### □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12명, 공모사업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마을공동체 대표 3인에 대한 자문 및 인터뷰를 실시함

-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해 2025년도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항목 및 각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의 타당성과 구체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함
- 그 외 인건비(강사비) 비중 제한규정 등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자문 및 인터뷰 기간: 2025년 3월~5월 간
- 자문 및 인터뷰 대상: 수원시 마을자치과 담당 공무원(3인),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담당자(3인), 참여공동체 대표(3인), 마을만들기 및 시민사회/공동체 관련 분야 전문가 6인
- 자문 및 인터뷰 내용: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선정기준의 문제점

### □ 앞서 살펴본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내용과 자문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의 주요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의 개념과 세부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해당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목적과 핵심요소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움
- 각 평가지표가 공모사업 실시 목적과 기준, 즉 무엇을 위해 어떠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누구나 사업의 지향성 및 평가의 중점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지 못함<sup>4)</sup>

4) 참여공동체 대표들은 현재 평가지표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해석과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전문가 역시 사업의 목적이 평가지표에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시민이나 마을활동가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을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

- 예) 공익성은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기여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본 공모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익성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운영의 적정성은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평가지표는 평가를 위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잣대로서의 교육적 기능도 갖고 있으나 현재의 평가지표는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사업유형(돈움-성장-확장-기획)별로 사업목적 및 기대성과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평가지표의 세부사항 및 배점(가중치)이 모든 사업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 단계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사업목적과 운영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평가항목의 세부내용과 배점(가중치)의 차별적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공동체 형성 초기단계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사업목적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성숙과 확장이 요구되는 기획단계에서는 지역문제 해결 등의 사업효과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컨대 공익성 지표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 초기단계에는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공익성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공동체 심화단계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 등을 공익성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단계별 사업유형에 따라 공익성에 대한 중요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삶의 질 제고와 같은 공익성은 공동체 심화단계(확장, 기획 단계)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현재 평가기준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성, 주민주도성, 지역성 또는 지역자원과의 연계, 민주성 등에 대한 개념이 평가지표 또는 평가 세부내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해당 개념들은 개방성과 참여의지 평가지표 등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의 조정을 통해 공동체성, 주민주도성, 지역자원 활용도, 민주성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sup>5)</sup>
- 특히 참여의지 평가지표는 개념 및 측정방법이 모호하므로 공동체성 또는 공동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참여의지 지표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 적정성 평가지표의 세부평가 기준이 되는 인건비(강사비)의 경우 사업성격과 공동체 성장단계에 큰 영향을 받는 예산 항목으로, 사업목적 및 특성, 공동체 성숙도를 반영하지 않고 인건비 비중을 전체 예산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교육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강사비로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기도 기준인 50% 이하에 비해서도 과도한 제한임
- 현재 문제의 핵심은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강사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데 있으므로 강사비 비중이 기준이 아니라 해당사업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선정해야 함
- 사업목적과 내용이 타당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건비 지출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예산조정을 전제로 조건부 선정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그 외 매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가 변동되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5) 마을만들기 조례 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 특성을 검토한 태윤재·박소현(2010)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정의의 핵심으로 주민자발성, 공동체 형성, 지역자원 활용, 생활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을 들고 있으며,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역시 "마을만들기"를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04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

###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 방법 및 기본방향

#### □ 본 장에서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함

- 검토대상인 평가지표는 내·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2차 면접심사의 평가지표이며 기본적인 지원 자격 충족 및 중복지원여부 등을 검토하는 1차 서류심사 기준은 포함하지 않음

#### □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을 위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내용 및 현황, 타자치단체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2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함

- 대상 : 관련분야 전문가 8인(시민사회, 공동체, 마을만들기, 성과평가 분야 전문가)

- 방법 : 심층인터뷰 및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한 설문 실시

- (1차) 심층인터뷰: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 핵심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수렴함
- (2차) 설문: 1차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안)를 바탕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여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적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함
  - 질문지는 크게 ① 평가지표 구성, 지표정의, 세부 평가항목(평가 착안사항)의 적정성, ② 평가지표의 배점(가중치) 설정방안, ③ 인건비(강사비) 비중 30%이하 제한규정 적정성 및 평가 반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 앞서 살펴본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목적, 수원시 현황 및 타 자치단체 사례,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공동체 대표에 대한 인터뷰 및 자문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 ①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핵심요소를 평가지표에 명확히 반영함

-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의 지향점과 핵심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정의와 세부 평가항목(착안사항)을 제시
-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침에서 제시된 필수 심사기준<sup>6)</sup>을 포함하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핵심요소이나 기존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평가사항을 보완

##### ②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함

- 사업유형(돌봄-성장-확장-기획)별 사업목적 및 기대성과에 맞게 각 유형별로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또는 배점(가중치)의 차별화 방안 검토

##### ③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

- 평가의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엄격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주민 및 평가자 누구나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으로 서술

6)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침에서는 공모사업 심사기준에 개방성(공동체 활동 호응도 및 주민참여도), 공익성(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기여도)을 필수 반영하도록 함

#### ④ 측정가능한 평가지표로 구성함

- 공모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주요 평가지표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평가지표가 측정인지 여부가 중요
-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서 작성에 고도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제출 가능한 자료 및 인터뷰로 측정이 가능한 평가지표와 세부 평가항목 구성 필요

## 평가지표 개선안

### □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의 기본방향, 타 자치단체 사례,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설문 의견을 바탕으로 공익성, 실현가능성, 공동체역량, 개방성, 지속가능성을 평가지표로 채택하고 세부 평가항목(평가 착안사항)을 구성함

- 기존의 운영적정성, 참여의지 평가지표는 실현가능성 지표 및 공동체역량 지표로 대체하고 공익성, 지속가능성, 개방성 지표는 기존지표를 유지하되 세부 평가항목을 변경·보완함
  - **(공익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의 편익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며 공익목적이 명확한 사업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세부 평가사항은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② 공공목적의 명확성, ③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도로 구성됨
  -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며 세부 평가사항은 ① 사업목적과 계획의 연계성, ② 사업내용의 적정성, ③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됨
  - **(지속가능성)**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하도록 구성원의 지속의지, 발전가능성, 계획 및 비전, 재정자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세부 평가사항은 ① 구성원의 지속의지, ② 발전가능성, ③ 장기비전 및 계획, ④ 재정자립 가능성으로 구성
  - **(개방성)** “공동체 구성원 외, 일반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며 공동체 관계망 확장, 외부와의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세부 평가사항은 ① 주민참여도, ② 교류 및 참여확대 노력, ③ 외부와의 연계·협력 가능성으로 구성
  - **(공동체역량)**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 및 가치, 적극적 참여의지와 민주적인 운영구조, 구체적 성장계획,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세부 평가사항은 ① 공동체성, ② 참여의지 및 운영의 민주성, ③ 공동체 성장계획, ④ 사업 이해도 및 수행경험으로 구성됨

### □ 사업유형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은 사업유형별 주요 평가요소에 따라 차이를 두어 구성하되, 지표배점(가중치)은 모든 사업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함

- 공동체 성장단계를 바탕으로 구분된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의 주안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업유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유형별 지표배점(가중치) 차별화에 대한 의견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 따라서 사업유형에 따른 차별성 반영을 위해 세부 항목 평가에는 유형별 차이를 두도록 하되 지표배점(가중치)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한 배점(가중치)을 모든 사업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지표안은 대안1(2단계 구분: **돋움·성장/확장·기획**)과 대안2(3단계 구분: **돋움/성장/확장·기획**)로 나누어 [표 9, 10]에 제시함<sup>7)</sup>

-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사업유형별 특성에 맞게 평가지표를 달리하는 것이 적정하나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평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평가의 실익을 고려하여 2,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안1)** 사업유형을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라 2단계(**돋움·성장/확장·기획**)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달리함
  - 공동체 초기발전 단계와 심화 단계의 특성으로 크게 구분하고,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천만 원 미만 규모)과 대규모 사업(천만 원 이상 규모)으로 구분하여 주요특성을 반영함
  -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유형별 특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면서도 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동체 형성단계와 성장단계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사업특성 간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대안2)** 사업유형을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라 3단계(**돋움/성장/확장·기획**)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달리함
  - 공동체 초기형성 단계, 성장단계, 심화 단계의 특성을 구분하고, 예산규모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업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반영함
  - 공동체 초기 발전단계를 두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형성단계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성장단계에서는 이전단계보다 발전된 역량과 계획을 요구하여 유형별 적정사업을 선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평가체계가 다소 복잡해지고 실제로 형성과 성장단계의 사업간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함
- **(대안적용 방안)** 현재 돋움과 성장유형 간 사업내용 구분의 모호성, 공동체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기준완화 필요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대안1을 우선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대안2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대안2의 경우 사업유형에 따라 적정 사업을 선정하는 세부기준을 제안해 줄 수 있으나 현재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경우 돋움과 성장유형 사업 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참여가 저조하여 지속적인 공동체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 따라서 평가효율성 차원에서 평가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대안1을 우선 적용, 사업참여가 활성화 된 후 사업유형을 고도화 하여 유형 간 목적·내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대안2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그 외, 인건비(강사비)는 30% 이하 제한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실현가능성 지표의 세부평가항목인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통해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하(또는 경기도 기준에 따라 50% 이하)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현가능성 지표의 세부평가항목인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통해 인건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sup>8)</sup>
  - 심사결과 사업목적과 내용이 적정하고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인건비 비중 초과허용, 사업목적과 내용은 적정하나 인건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 예산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 이와 같이 인건비 비중에 대한 허용범위를 탄력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함께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7) 평가지표(안)의 적용에 있어서 본 장에서 제시한 대안1, 2와 같이 사업유형별로 세부 평가항목을 다르게 제시하는 방법과 세부 평가항목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각 대안별로 유형에 따라 제시된 세부 평가항목에 보다 비중을 두어 평가하도록 평가지침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8)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 예산의 3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인건비 규정이 과도하므로 경기도 규정에 맞게 50%로 상향하여 인건비 활용의 폭을 넓혀 주되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을 엄격히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유형별로 인건비 비중 제한의 폭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표 9]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 개선(대안1): 돌음·성장/확장·기획 2단계 구분

지표명	지표정의(개념)	세부 평가항목 (평가 척안사항)	배점 (기준치)	유형별 평가지침	
				돌음·성장	확장·기획
공익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며 공익목적이 명확한 사업인지 여부를 평가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사업이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확산, 이웃관계 회복 등에 기여하는가? ② (공공목적의 명확성)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인가? ③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인가?	25	①, ②	①, ②, ③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계획이 적정인지 여부를 평가	① (사업목적과 계획의 연계성)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②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활동 내용 및 일정, 참여자의 역할, 성과목표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③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을 수행하기에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 없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인건비(강사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25	①, ②, ③	①, ②, ③
지속가능성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의 지속의지, 발전 가능성, 비전 및 계획, 재정지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	① (구성원의 지속의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 의지가 있는가? ② (발전가능성) 향후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③ (장기비전 및 계획)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비전과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가? ④ (재정지립 가능성) 회비, 기금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 등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①, ②	①, ②, ③, ④

지표명	지표정의(개념)	세부 평가항목 (평가 확인사항)	배점 (기준치)	유형별 평가지침	
				돈음·성장	확장·기획
개방성	공동체 구성원 외, 일반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며 공동체 관계망 확장, 외부와의 연계·협력에 대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평가	① (주민참여도) 공동체 구성원 외 일반 주민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 및 참여가 높은 사업인가? ② (교류 및 참여확대 노력) 사업내용 및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주민소통 계획, 참여자 확대를 위한 참여유도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③ (외부와의 연계·협력 가능성) 타 공동체 및 단체, 활동가, 지역자원, 행정, 지원기관 등과 구체적인 연계·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15	①, ②	①, ②, ③
공동체역량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 및 가치, 적극적 참여의지와 민주적인 운영구조, 구체적 성장계획,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	① (공동체성)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제안 배경이 공동체의 활동목적과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② (참여의지 및 운영의 민주성) 공동체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었는가? ③ (공동체 성장계획) 공동체 활성화 및 확장,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④ (사업 이해도 및 수행경험) 마을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 및 사업수행 경험이 충분한가?	20	①, ②	①, ②, ③, ④

[표 10]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평가표 개선(대안2): 돌음/성장/확장·기획 3단계 구분

지표명	지표정의(개념)	세부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배점 (기준치)	유형별 평가지침		
				돌음	성장	확장·기획
공익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며 공익목적이 명확한 사업인지 여부를 평가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사업이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확산, 이웃관계 회복 등에 기여하는가? ② (공공목적의 명확성)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인가? ③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인가?	25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실행가능성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계획이 적정인지 여부를 평가	① (사업목적과 계획의 연계성)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②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활동 내용 및 일정, 참여자의 역할, 성과목표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③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을 수행하기에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 없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인건비(강사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25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지속가능성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의 지속의지, 발전 가능성, 비전 및 계획, 재정지원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	① (구성원의 지속의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 의지가 있는가? ② (발전가능성) 향후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③ (장기비전 및 계획)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비전과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가? ④ (재정지립 가능성) 회비, 기금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 등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지표명	지표정의(개념)	세부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배점 (가중치)	유형별 평가지침		
				도움	성장	확장·기획
개방성	공동체 구성원 외, 일반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며 공동체 관계망 확장, 외부와의 연계·협력에 대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평가	<p>① (주민참여도) 공동체 구성원 외 일반 주민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 및 참여가 높은 사업인가?</p> <p>② (교류 및 참여확대 노력) 사업내용 및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주민소통 계획, 참여자 확대를 위한 참여유도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p> <p>③ (외부와의 연계·협력 가능성) 타 공동체 및 단체, 활동가, 지역자원, 행정, 지원기관 등과 구체적인 연계·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p>	15	①, ②	①, ②	①, ②, ③
공동체 역량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 및 가치, 적극적 참여의지와 민주적인 운영구조, 구체적 성장계획,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	<p>① (공동체성)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제안 배경이 공동체의 활동목적과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p> <p>② (참여의지 및 운영의 민주성) 공동체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었는가?</p> <p>③ (공동체 성장계획) 공동체 활성화 및 확장,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p> <p>④ (사업 이해도 및 수행경험) 마을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 및 사업수행 경험이 충분한가?</p>	20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 05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자발적 시민참여 확대, 마을자치 실현 기반 마련이라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 체계구축이 필요함**

  - 단순 취미 동아리 활동 및 일회성 사업과 같이 사업취지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등 사업 선정 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정의 및 지표별 세부 평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헌조사, 사례조사, 심층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평가지표 개선방향 설정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 평가지표와 세부 심사항목을 구성함
- **검토결과, 현재 수원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기준은 평가지표의 명확성, 구체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함**

  - 평가지표의 개념과 세부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해당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목적과 핵심요소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움
  - 사업유형(돌봄-성장-확장-기획)별 사업목적 및 기대성과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평가지표의 세부사항 및 배점(가중치)이 모든 사업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 단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현재 평가기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성, 주민주도성, 지역자원 활용도, 민주성 등에 대한 개념이 평가지표 또는 평가 세부내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 적정성 평가지표의 세부평가 기준이 되는 인건비(강사비)의 경우, 사업목적 및 특성, 공동체 성숙도를 반영하지 않고 30%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것은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그 외 매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가 변동되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목적과 수원시 현황 및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전문가·업무담당자·공동체 대표에 대한 인터뷰 및 자문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 ①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핵심요소를 평가지표에 명확히 반영
  - ②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 차별화
  - ③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지표의 내용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④ 측정가능한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 개선안 및 적용방안**

  -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의 기본방향, 타 자치단체 사례,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설문의견을 바탕으로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개방성, 공동체역량을 평가지표로 채택하고 지표정의 및 세부 평가항목(평가 착안사항)을 구성함

- 사업유형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은 사업유형별 주요 평가요소에 따라 차이를 두어 구성하되, 지표배점(가중치)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함
- 평가지표 개선(안)은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돈움·성장/확장·기획 유형(2단계)과 돈움/성장/확장·기획 유형(3단계)으로 나누어 제시함
- 현재 돈움과 성장유형 간 사업내용 구분의 모호성, 공동체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기준완화 필요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대안1을 우선 적용하고, 사업참여 활성화 및 사업유형 구분 고도화 이후에 장기적으로 대안2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표 11] 평가지표 개선사항 요약

기존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공익성	30	•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기여도
운영적정성	20	• 마을만들기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20	•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 사업추진 의지 • 회비, 기금 운영 등 활동지속을 위한 자립준비성
개방성	15	• 공동체 활동 호응도 및 주민참여도 • 외부 단체·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및 사업 연계추진 정도
참여의지	15	• 적극적·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 공동체 내부회원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도



개선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대안1		대안2		
			돈움·성장	확장·기획	돈움	성장	확장·기획
공익성	25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② 공공목적의 명확성 ③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도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실현가능성	25	① 사업목적과 계획의 연계성 ② 사업내용의 적정성 ③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지속가능성	15	① 구성원의 지속의지 ② 발전가능성 ③ 장기비전 및 계획 ④ 재정자립 가능성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개방성	15	① 주민참여도 ② 교류 및 참여확대 노력 ③ 외부와의 연계·협력 가능성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공동체역량	20	① 공동체성 ② 참여의지 및 운영의 민주성 ③ 공동체 성장계획 ④ 사업 이해도 및 수행 경험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 그 외, 인건비(강사비 등)는 30% 이하 제한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실현가능성 지표의 세부평가항목인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통해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 정책제언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의 효율적,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목적 및 내용, 기대성과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함
  -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의 근본 취지와 세부 사업유형이 요구하는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성과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을 신청 공동체와 평가자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함
  - 명확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신청 공동체가 선정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적정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사업을 구상·설계 할 수 있으며, 평가자 역시 평가지표의 적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공모사업 선정심사 전에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사전 컨설팅이 충실히 진행되어 신청 공동체가 사업목적과 평가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업계획서 및 첨부자료의 세부사항과 작성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지표의 세부사항들이 평가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업내용들이 사업계획서 및 첨부자료에 담겨있어야 하므로 사업목표와 내용,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등의 작성방법,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컨설팅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함
  - 특히 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신청 공동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청 공동체는 사전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자료를 쉽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양식과 예시를 제시해 주어야 함
- 적정사업의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충분한 평가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전에 사업내용과 평가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실시되어야 함
  - 참여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미숙, 자료부족 등의 문제로 적정사업 선정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충분한 면접심사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수원시와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현장 전문가, 이웃 자치단체의 마을활동가 등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한 인터뷰 및 자료 검토시간을 제공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별하도록 해야 함
    - 특히 확장·기획 유형의 공동체 심화단계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심사시간이 필요
  - 이와 함께 사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운영 방향과 유형별 특성, 평가지표 체계 및 심사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 적용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평가위원 전문성과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해 인건비(강사비 등)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하므로 인건비 비율을 30% 이하(또는 경기도 기준에 따라 50%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허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내용에 비추어 인건비 규모가 적정할 경우 초과 설정을 허용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인건비 규모가 부적정한 사업에 한해 예산수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인건비 비율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목표치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성과의 측정을 통해 사업운영의 정당성 및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업성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성과계획 및 목표치를 사전설정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지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사후적으로도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의 정당성 및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객관적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사업목적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려는 노력 필요하며 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의 근거로 작동 가능
    - 성과공유회 등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 확산하도록 할 필요
-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업 선정은 평가지표의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정책방향과 수원시민의 인식수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전반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참고문헌

- 고양시. (2025). 2025년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 관악구. (2025). 2025년 하반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 군포시. (2025).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안내서.
- 마포구. (2025). 2025년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 박선희. (2014).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285-306.
- 사득환, 최일문. (2023).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성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301-325.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2025). 2025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계획.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2024). 2024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계획.
- 안양시. (2025). 2025년 안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 용산구. (2025). 2025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 용인시. (2025). 마을공동체 제2차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 태윤재, 박소현(2010).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2000년대에 제정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7), 175-182.
- 평택시. (2025). 2025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차 공고.
- 화성시. (2025). 2025년 화성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 Weil, Marie O. (1996). Community Building: Building Community Practice. *Social Work*, 41(5), 481-499.

MEMO



